

제26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2025. 9. 22.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595호로 2025년 9월 8일 우경란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9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구민 모두가 생애주기별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전통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문화를 실천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종사자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 나.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을 규정(안 제5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식생활교육지원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2025.9.3.~2025.9.10./5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식생활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	제 명	내 용
제1조	목적	「식생활교육지원법」과 목적 부합
제2조	정의	식생활, 식생활교육, 전통 식생활 문화 등에 대해 규정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 구민 맞춤형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의무 구민: 건전한 식생활 구현 의무 종사자: 교육 활성화 노력 의무
제4조	구민 등의 책무	
제5조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	교육 실천의 구체적 원칙 제시
제6조	식생활교육 계획 수립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에 의거 5년마다 계획 수립(강행규정)
제7조	식생활교육의 평가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7조에 의거 5년마다 추진성과 평가 및 환류(강행규정)
제8조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 구청장 - 부위원장: 위촉직 위원 중 호선 - 당연직 위원: 보건소장 - 2년 임기, 한차례 연임 가능 - 간사: 식생활교육 담당 부서장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	위원의 임기 등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2조	회의 등	
제13조	수당 등	
제14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구청장이 센터 지정 가능 - 지정이 어려운 경우 위탁 가능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같음 가능
제15조	시행규칙	필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에서는 식생활교육 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에서는 식생활

교육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구청장이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지정이 어려운 경우 위탁가능 규정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로 갈음 가능함을 규정함.

○ 검토 결과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¹⁾(시·도계획 및 시·군·구 계획의 수립), 제17조²⁾(식생활 교육의 평가 등)에서 구청장에게 5년 주기의 계획 수립 및 성과 평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0조³⁾(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기에 본 조례안에 식생활교육 계획 수립 및 평가, 식생활교육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사료됨.

1) 제16조(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 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은 제20조에 따라 시·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2) 제1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3) 제20조(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

- ①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심의, 추진 실적 점검과 평가 등을 위하여 시·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그 지역 식생활 교육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 ④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아울러, 본 제정 조례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센터 지정 권한과 더불어 동법 제25조의24)(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가 명시하지 않은 위탁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117조5)에 의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므로 상위법의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갈음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음.

【영등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사업대상: 관내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시설 218개소
- 운영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예산액: 679,860천원
- 주요내용
 - 어린이급식소 관리
 -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강화

-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무 및 권한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4) 제25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지원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제3항에 따른 지정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조직, 시설·설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5)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참 고 자 료

1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 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은 제20조에 따라 시·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0조(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

- ①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심의, 추진 실적 점검과 평가 등을 위하여 시·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그 지역 식생활 교육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 ④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식생활 교육 관련 지원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 2. 제3항에 따른 지정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시설·설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